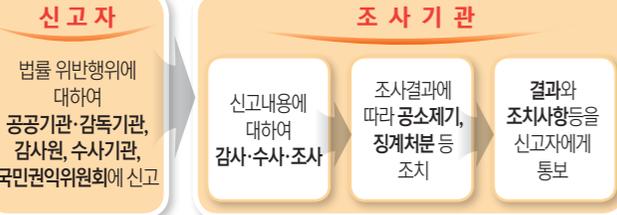


신고·처리 절차를 알아보까요?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도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 불이익조치 금지
- 원상회복 조치
-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 책임감면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등에는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금품등 수수에 대해
알아보까요?

국민결愛 110 정부민원 110

부패·공익침해 신고
1398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제도개선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TEL : (044) 200-7706 FAX : (044) 200-7939
www.acrc.go.kr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제도개선

청렴 대한민국! 새롭게 시작합니다.

「청탁금지법」은

어느 곳,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공평한 세상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법입니다!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렴문화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청탁금지법
한눈에
알아보기



이런 기관들이 포함돼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세부류의 대상자가 있죠!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및 배우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배우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및 배우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공무수행사인)

-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일반국민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

부정청탁에 대해
알아보까요?

부정청탁의 금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제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고질적인 청탁문화를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힘있는 사람에게 청탁하는 풍조를 개선하려는 건가요?



위 14가지의 유형에 대한
공직자들의 지위·권한 남용

예외사유로 7개 가이드 라인을 제시 하였습니다

- 1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3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 하는 행위
-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행위



부정청탁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들에게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1천만원 이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민간인) ▶ 2천만원 이하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형사처벌

공직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무화 하였으며, 징계와 함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매번 감사합니다

이정도 금품이면 관찮을 겁니다

안되요!! 주어서도 받아서도 안됩니다!



이것이 ~ 금품등 수수예요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8가지가 있습니다

- 1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사고·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의 금품등
- 3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직무관련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기준초과 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형사처벌